[별지 제1호 서식]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창성학원(대덕대학교)의 2019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0년 0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창성학원(대덕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창성학원(대덕대학교)의 2020년 0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2020년 4월 3 일

학교법인 창성학원
감사 : 황인상
감사 : 정상민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 창성학원 관리과장
성명 : 현기철
직명 : 대덕대학교 행정처장
성명 :

감 사 보 고 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창성학원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 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액		
1.법인 일반업무 관련			1건	별지 붙임
2.법인 수익사업 관련			3건	별지 붙임
계				

2020년 4월 3 일

학교법인 창성학원
감사 : 황인상 (인)
감사 : 정상민 (인)

피감사 기관장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illegible] (인)

[별지 제2호 서식]

학교법인 창성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19회계연도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1. 수익회계 가. (현황) 2020년 2월 29일 현재 법인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총 11,187백만원 - 예치 금융기관(예치금액) : 국민은행(예치액: 8,436백만원), 수협은행(예치액: 2,752백만원) -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예치 운용기준 : 감사일 현재 없음 (제도개선 사항) 법인의 기본재산 및 임대보증금 등을 금융기관 예치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매년 일정한 시기에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나. 법인 임대료 · 관리비 미수금 과다 사항 다. 임대료 인상 자제 권고 -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인상은 자칫 언론에 법인의 이미지 실추 가능성이 있고, 정부정책(반값임대료)에 반함 2. 일반회계 가. (현황) 2019년 4월 17일 업무추진비 40만원 - 내용 : 대학 5급,6급 직원들과의 업무 간담회, 2019년 7월 18일 업무추진비 25만원(사무국장, 대덕대학 총장 및 대학관계자 업무협의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으로 카드전표이외 간담회 참석자, 간담회 내역 등이 없음 (주의) 향후 업무추진비 지출 시 카드전표 이외 간담회 참석자, 간담회 내용 등을 첨부하여 객관적인 업무추진비 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1. 수익회계 가. 법인의 기본재산 및 임대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 시 현재 우리 법인의 주거래은행에서 산하학교인 대덕대학교의 장학금 지급과 은행의 안정성 있는 금리 제안 등을 고려하여 제1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객관성 있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추진하겠음 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과다한 미수금은 소수의 장기 미수 임차인으로 치우쳐 있어 관련 임차인에게 지속적인 미수금 독려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임대물의 반환 청구 등으로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음 다. 임대료 인상은 계약 20여년동안 임대료 동결로 수익사업이 악화되는 현재의 입장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겠음 2. 일반회계 가. 업무추진비 지출시 사용목적 및 참석자명단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안내하고, 매월 지출서류 정리 시 미비 서류 보완하겠음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직인(서명)